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

2015. 10. .

방송통신위원회
(운영 지원 과)

1. 개정(제정)이유

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예외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신설 및 부패행위 제안·주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지침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제공되는 식사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개정(안 제14조제1항제2호)
- 나. 허용가능한 금품 등의 범위 중 직원 개인기념일 등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,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은 삭제(안 제14조제1항제6호)
- 다.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대상을 공무원에서 공무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으로 개정(안 제14조의2)
- 라. 외부강의·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미리 위원장에게 승인 받도록 신설(안 제15조제4항)
- 마.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한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중 기관명 또는 부서명 등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은 삭제(안 제17조제2항제4호)
- 바. 별표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의 징계양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(안 제20조제2항)
- 사. 부패행위 관련 감독자 및 제안·주선자 엄중 문책(안 제20조제3항)

아. 반기별 외부강의 관련제도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도록 개정(안 제 22조제1항)

자.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 실태를 분석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신설(안 제24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

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2호 중 “간소한”을 “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”을 “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2 본문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”으로 한다.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·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.

제20조제2항 중 “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”을 “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”으로, “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준용하여야”를 “「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」을 따라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위원장은 허가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사건인 경우 그 비위행위자는

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·주선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 본문 중 “받은”을 “받거나 제15조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1항 중 “매년”을 “반기별”로, “교육을 하여야”를 “외부강의 관련제도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”로 한다.

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분석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방송통신위원회 외부강의 대가기준

(제15조제3항 관련)

(단위: 천원 / 1시간)

구분	위원장,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	고위공무원, 3·4급 공무원	5급 이하 공무원	비고
상한액	400(위원장) 300(부위원장 및 상임위원)	230	120	원고료 포함, 여비 미포함
1시간 초과	300(위원장) 200(부위원장 및 상임위원)	120	100	

※ 강의시간 산출기준 :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,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(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)

※ 동 기준은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,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

※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

[별표 2]

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

비위 유형		금 액		100만원	100만원 이상	300만원 이상	500만원 이상	1,000만원
		수 수	행 위	미만	300만원 미만	500만원 미만	1,000만원 미만	이상
의례적인 금품·향응 수수의 경우	수 동	견책	감봉·정직	강등	해임	파면		
	능 동	견책·감봉	정직	강등·해임	해임·파면	파면		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 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	수 동	감봉	정직·강등	해임	파면			
	능 동	정직	강등·해임	해임·파면	파면			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 향응을 수수하고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수 동	정직·강등	해임	파면				
	능 동	강등·해임	해임·파면	파면				

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·교통 등 편의

3. ~ 5. (생략)

③·④ (생략)

제14조의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5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① ~ ③ (생략)

<신설>

제17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 ① (생략)

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-----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-----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의2(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) 공무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-----

제15조(외부강의·회의 등의 신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·회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기관명 또는 부서명 등 단체 명의로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
제20조(징계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장이 이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」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.

<신설>

③ (생략)

④ (생략)

제21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

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20조(징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때에는 -----
----- 「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」
을 따라야 --.

③ 위원장은 허가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사건인 경우 그 비위 행위자는 물론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그 비위행위의 제안·주선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단계 높은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21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

① -----
----- 받거나

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제22조(교육)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24조(행동강령의 운영 등) (생략)

<신 설>

제15조제3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-----

-----.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교육) ① -----

----- 반

기별 ----- 외부강의 관련제

도 등을 포함하여 교육하여야 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행동강령의 운영 등) ①

(현행과 같음)

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

들의 외부강의 실태를 분석하여

반기별 1회 이상 방송통신위원

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

다.